의안번호	제2호 관련
의 결 년 월 일	2026. 2. 4. (제334회)

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 안 자	최명수 위원 등 3인
제출연월일	2026. 2. 4.

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번호	제2호 관련

제출년월일 : 2026. 2. 4.
제 안 자 : 최명수 의원

1. 수정이유

○ 안 제4조제3항 단서 중 '지방소멸대응기금에'라는 표현은 기금의 사용 성격과 목적을 모호하게 할 우려가 있음. 이에 조사를 '지방소멸대응기금을'로 수정하여,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은 재정안정화계정 사용 한도(70%)의 예외가 적용되는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규 해석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함. 또한, 오기된 띄어쓰기를 교정함으로써 법규 문장의 전문성과 완결성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수정내용

○ 제4조제3항 단서 중 “제2항 제3호와 지방소멸 대응기금에”를 “제2항제3호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을” 로 수정

3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

○ 예산조치: 해당없음

금산군조례 제 호

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4조제3항의 단서 중 제2항 제3호와 지방소멸 대응기금에”를 “제2항제3호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을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 범위) 이 조례 개정 이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적용하지 않는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4조(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금산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.	제4조(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----------.	제4조(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----------.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	1.·2. (현행과 같음)
3.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	3. 군수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---------	3.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②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	③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

	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제2항 제3호와 지방소멸 대응기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	---------- ---------- -. --- 제2항제3호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---------- ---------- -.

금산군조례 제 호

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3호 중 “그 밖에 군수가 적립”을 “군수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제2항 제3호와 지방소멸 대응기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 범위) 이 조례 개정 이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적용하지 않는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금산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·2. (생 략) 3.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(생 략) <신 설>	제4조(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 3. 군수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--------- ② (현행과 같음) 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제2항 제3호와 지방소멸 대응기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붙임 **관계법령(발췌)**

□ [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]

제16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·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이하 "통합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(이하 이 조에서 "예수금"이라 한다)
2.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
3.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
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
2.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
3. 통합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경비

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.

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른 회계로의 전출
2. 지방채 원리금 상환

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,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